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	관련
번호	39호

제출년월일 : 1998. 9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수정이유

- 지방공무원 정원감축과정에서 의회사무국 정원조정안중 지방의회의 지원 기능상 과다하게 감축된 정원을 조정하고
- 정원감축으로 발생하는 “초과현원에 대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있는 것으로 본다”라는 경과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

☐ 수정주요골자

의회사무국 정원을 17명에서 18명으로 조정 (안 제2조 제2호)

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 신설 (안 부칙 제2항)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

안 제2조제1호중 시본청 정원 “406명”을 “405명”으로하고, 제2호중 의회사무국정원 “17명”을 “18명”으로 한다.

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파주시의 본청·소속기관 및 하부행정 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1. 시 본 청 : 406명 2. 의회사무국 : 17명 3. 직 속 기 관 : 98명 4. 사 업 소 : 22명 5. 출 장 소 : 9명 6. 읍면동(2출장소를 포함 한다) : 286명	제2조(정원의총수) ----- ----- ----- 1. 시 본 청 : 405명 2. 의회사무국 : 18명 3 ~ 6. (개정안과 같음)
	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부 칙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검 토 보 고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- 동 수정안은 1998년 8월 24일 파주시장이 제출한 파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1998년 9월 2일 파주시장이 제출한 집행부 수정안으로 1998년 9월 2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음.

□ 수정이유

-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원보좌를 위해 당초 19명중 2명을 감축키로 하였던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명만 감축하고,
-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에 대해 2000년말까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자 동 내용을 부칙에 명시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시본청 정원을 406명에서 405명으로,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7명에서 18명으로 조정함.(안제2조)
- 초과되는 인력에 대해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.(안부칙제2항)

□ 검토의견

- 의정활동 및 의원보좌를 위해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명만 감축키로 한 것은 지방자치의 원활한 운영과 범국가적인 구조조정 방침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
- 경과조치규정을 신설하여 감축되는 인원을 2000년말까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효율적인 인력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정부의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상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당연한 조치라고 사료됨.